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46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김주영·김태선·박홍배

박상혁 • 이학영 • 강준현

김형동 • 문정복 • 박균택

손명수 · 정태호 · 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 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 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 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			
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u>2025년</u>	<u>2027년</u>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			
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			
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